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은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737

발의연월일: 2024. 10. 16.

발 의 자:최은석・이인선・이상휘

김소희 • 고동진 • 조지연

송언석 • 이달희 • 정동만

박충권 · 김종양 · 박덕흠

최보윤 • 박정훈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임대사업자로서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려는 자에게 거주자가 해당 임대주택의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20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의 건설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(안 제97조의 9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457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

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7조의9의 제목 "(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)"를 "(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한다]에게 2024년 12월 31일"을 "한다] 또는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2 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할 자(이하 이 조에서 "20년장기민간임대 주택사업자"라 한다)에게 2027년 12월 31일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를 양도받은 날(인허가 지연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 설하여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)부터 3년 이 내에 해당 토지에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여 공 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는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2 0년장기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"로 하고.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.

1.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를 양도받은 날(인허가 지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)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 택을 건설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

2.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토지를 양도받은 날(인허가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)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여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97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했 제97조의9(공공매입임대주택 건 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) ① 거주자가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제1 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 택(이하 이 조에서 "공공매입임 대주택"이라 한다)을 건설할 자 [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 택사업자(이하 이 조에서 "공공 주택사업자"라 한다)와 공공매 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 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로 한정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주택건설 사업자"라 한다]에게 2024년 12 월 31일까지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

② (생략)

③ <u>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를 양</u> 도받은 날(인허가 지연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

제97조 :	의9 <u>(임대</u>	주택	건/	설을	목적
으로	양도한	토지	에 [·]	대한	과세

정

아

개

특례) ① -

----- 한다] 또는 「민간임 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제5호의2에 따른 20년장기민간 임대주택을 건설할 자(이하 이 조에서 "20년장기민간임대주택 사업자"라 한다)에게 2027년 12 월 31일----.

- ② (현행과 같음)
- ③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</u> <u>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</u> <u>설사업자 또는 20년장기민간임</u>

로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)부터 3년 이내에 해 당 토지에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여 공 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지 아 니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 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대주택사업자가

- 1.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를 양 도반은 날(인허가 지연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)부터 3년 이 내에 해당 토지에 공공매입임 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 설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
- 2.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사업자 가 토지를 양도받은 날(인허 가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

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)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토지 에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여 「민 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 ④・⑤ (생 략) ④・⑤ (현행과 같음)